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없는 당사자: _____ 주 변호사 면허 번호: _____ 이름: _____ 법무법인 이름: _____ 거리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변호 의뢰인 (이름): _____	법원용  <h2 style="margin: 0;">참고용 제출하지 마시오</h2>
캘리포니아주 상급 법원, 소재 카운티 거리 주소: _____ 우편 주소: _____ 시 및 우편번호: _____ 법원 이름: _____	
사건명: <span style="float: right; font-size: 1.2em;">제출하지 마시오</span>	
<b>복지 및 기관법 366.26조에 의거한상고 신청 제출 의도 통지서 및                  심의회 설치 명령 검토를 위한 기록 요청                  (California 법원 규칙, 규칙 8.450)</b>	사건 번호:  <span style="font-size: 1.2em;">제출하지 마시오</span>

**통지서**

청소년 법원은 이 아동에 대한 귀하의 부모로서의 권리 종료 및 자녀의 입양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항구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이 청소년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려면 먼저 의도 통지서를 제출하여 청소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본 양식을 의도 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청소년 법원의 결정으로부터 7일 안에 의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마감일에 대한 정보는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카운티 복지부, 지방 검사, 자녀,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의 법적 후견인이 아닌 경우,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청소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 사건 파일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on Requesting Access to Records for Persons With a Limited Right to Appeal* (제한된 항소권을 갖는 사람의 기록 접근 요청에 대한 정보)(양식 JV-291-INFO)를 참조하십시오. **JV-291-INFO** 양식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 또한 [www.courts.ca.gov/forms](http://www.courts.ca.gov/forms) 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이름:
  2. 신청인의 주소:
  3. 신청인의 전화번호:
  4.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 a.  부모 (이름): \_\_\_\_\_
    - b.  법적 보호자
    - c.  카운티 복지 에이전시
    - d.  아동
    - e.  기타 (아동과의 관계 또는 이 사건에서의 이해 관계를 진술하십시오): \_\_\_\_\_
  5. 아동의 이름: \_\_\_\_\_ 아동의 생년월일: \_\_\_\_\_
  6. a. (날짜): \_\_\_\_\_ 에 복지 및 기관법 366.26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법원이 심의회 설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날짜에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상고 신청서를 제출할 의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기가 기록을 정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 b. 명령의 근거가 된 심의회의 모든 날짜를 아는데로 기재하십시오:
  7. 복지 및 기관법 366.26에 의거한 심의회가 다음 일시로 예약되었습니다(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입하십시오): \_\_\_\_\_
  8.  신청자는 청소년 사건 파일의 특정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가 받았으며, 해당 문서가 있는 경우, *Order After Judicial Review on Petition for Access to Juvenile Case File* (청소년 사건 파일 접근 청원에 대한 사법 검토 후 명령) (양식 JV-574)에 대한 복지 및 기관법 827(a)(1)(Q)에 의거한 법원 명령 사본을 첨부합니다.
- 날짜: \_\_\_\_\_

**▶ 제출하지 마시오**

(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 (서명  신청자  변호사)

**Notice of Intent to File Writ Petition** (상고 신청 제출 의도 통지서)는 반드시 상고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기록 상의 변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 및 마감일에 대한 정보는 이 양식 뒷면을 읽으십시오.**

항소 사건 제목 :  <b>참고용</b>	항소 사건 번호:  <b>제출하지 마시오</b>
------------------------------	----------------------------------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법원이 부모의 권리 종료 및 아동 입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자녀의 법적 보호자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적합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친척에게 아동을 배치하는 항구적 계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6세 또는 그 이상인 경우 법원이 또 다른 항구적 생활 계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위탁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는 항구적 계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선택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선호되는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의 주된 목표는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 및 기관법 § 366.26을 확인하십시오**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설치하는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 다음에 나오는 상자에 명시된 시간 내에 청소년 법정에 본 상고 신청 제출 의도 통지서 및 기록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이를 통해 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게 되며, 법원이 기록을 준비할 것입니다.
- 항소 법원에 기록이 제출되면, 귀하는 통지를 받게 되며 해당 기록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항소 법원에 기록이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 선택적인 *Petition for Extraordinary Writ* (특별 상고 신청서) (양식 JV-825)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상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상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항소 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건의 모든 당사자, 아동의 법원 지정 특별 변호인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 자원 봉사자, 아동의 현재 간병인 및 청소년 법원 소송에 참여한 사실상의 부모에게 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사람들에게 청원서 사본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 증명서를 귀하의 상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 366.26(I);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8.450-8.452를 확인하십시오**

**언제 상고 신청 제출 의사 통지서 및 기록 요청을 신청해야 합니까?**

- 법원이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 설치 결정을 내릴 때 귀하가 출석했던 경우, 귀하는 법원이 심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우편으로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 설치에 대한 결정을 받았고 귀하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다면, 귀하는 서기가 통지서를 우송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의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우편으로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 설치에 대한 결정을 받았고 귀하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 살고 있다면, 귀하는 서기가 통지서를 우송한 날로부터 17일 이내에 의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우편으로 항구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 설치에 대한 결정을 받았고 귀하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귀하는 서기가 통지서를 우송한 날로부터 27일 이내에 의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양육권 기관 측 관계자인 경우, 이 상자에 명시된 시간 내에 우편을 발송하도록 양육권 공무원에게 본 의도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8.450, 5.540(c)를 확인하십시오**

- 심의회 설치 명령이 임시 판사 역할을 하지 않는 판정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귀하가 의도 통지서를 제출하는데에는 추가로 1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복지 및 기관법, §§ 248-252;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규칙 5.538, 5.540을 확인하십시오**

**의도 통지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상고를 신청하는 사람, 또는
- 상고를 신청하는 사람의 기록 상의 변호사